

제339회 임시회
2015.4.30. 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4. 30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인수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21일

(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인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(안 제8조)
-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3조제2항과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 제13조제2항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함(부칙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신선기)

- '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운용중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과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7조(생 략)	제1조 ~ 제7조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<u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.</u>	<u>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